

대구예술대학교 분반 및 폐강에 관한 규정

(제정 2001.03.01. 교무위원회)

(개정 2019.06.20. 교무위원회/자구수정)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대구예술대학교(이하 “우리 대학교”라 한다)의 원활한 수업진행을 위하여 합반, 분반 및 폐강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합반기준) 과목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합반할 수 있다.

제3조 (분반 기준) 한 과목이 100명을 초과할 때에는 분반할 수 있다. 다만, 실험·실습·실기 등 특수과목에 대해서는 30명이상일 경우 분반할 수 있다.

제4조 (폐강 기준) 전공과목은 10명 미만일 경우에, 교양과목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강의를 개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강의를 개설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.